

삼척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
제출자 : 삼척시장

1. 제안이유

'95 시세조례개정시 누락된 지방세 조례를 삽입하고,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천재등으로 인한 납입기한의 연장은 취득세등 신고납부기한 연장경우에만 적용됨으로 부과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 경우도 "징수유예"규정을 적용 토록 하기 위함(안 제7조)
- 재산세 감면은 기 법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이므로 지방조례로 정하던 내용을 삭제 (안 제17조)
- '95개정시 구관사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(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관사입 부동산) 누락으로 관련조항 삽입 (안 제19조)

3. 관련근거

- 시세조례개정 준칙시달
- 세정13400 - 185('95. 3. 4)

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삼척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중 "제9조 및 제9조의2"를 "제9조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납기한의 연장"을 "천재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"으로 하고, 동조제1항중 "납부 또는 납입기한"을 "기한"으로 "납기한"을 "기한이 만료되기 전"으로 하며, 동조제2항중 "납기한의 연장"을 "기한의 연장"으로 "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"를 "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"로, "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"를 "연장할 수 있다."라고 하고,

동조제3항중 "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"을 "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"으로, "또다시 납기한의 연장"을 "또다시 기한의 연장"으로, "납기한의 연장·기한내에"를 "연장된 기한내에"로 "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"를 "다시 연장할 수 있다."로 하며, 동조 제5항중 "납기한"을 "신고납부기한"으로, "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정수한다."를 "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"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중 "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"를 "비과세 적용자"로 하고, 동조 본문중 "법 제184조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"을 "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"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중 "경감"을 "감면"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"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"을 "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"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"를 "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"로 한다.

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9조의 제목중 "경감"을 "감면"으로 하고 동조"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이과 합은" 을 립"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
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
산이과 합은"으로 한다.

제50조제2항중 "법 제5장"을 "법 제234조의12"로, "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"를
"비과세 받고자"로 "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"을 기타 비과세 대상토지
임을"으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중 "비과세 및 감면적용자"를 "비과세 적용자"로 하고, 동조중 "법 제
238조의2, 법제270조,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238조의2의 규정
에 의하여"로 "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"를 "비과세 받고자"로 한다.

제63조의 제목중 "비과세 및 감면적용자"를 "비과세 적용자"로 하고, 동조중 "법
제5장"을 "법 제245조의2"로 "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"를 "비과세 받고자"로 한
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
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

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조(파세민제등을 위한조례)지방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파세민제 및 불관일파세 또는 일부파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7조(납기한의 연장) ①</u>남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남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4조(파세민제등을 위한조례)</u> --- ----- <u>제 9조의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조(친제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</u> <u>한이 만료되기 전</u> ----- -- ② ----- <u>기한의 연장</u> ----- ----- <u>기한이 만료된 날의</u> <u>의일부터 3월 이내의</u> ----- ----- <u>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</u></p>	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</u></p>
<p>(①)(생략)</p> <p>⑤ <u>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기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.</u></p>	<p>- - <u>또다시 기한의 연장</u></p> <p><u>연장된 기한내에</u></p> <p>- - <u>다시 연장할 수 있다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신고납부기한</u></p> <p>- - <u>기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.</u></p>
<p>제17조(<u>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</u>) 뿐 제184조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17조(<u>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</u>)</p> <p>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 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"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	<p>제19조 (-----) 갑면) ①법 제266조제3항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- -----</p>
<p>1. ~ 4.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 로 한다.</p> <p>제32조 (종군자등의 감면신청) ①영제 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.동원 또는 전사.사망한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1. ~ 4.(현행과같음)</p> <p>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----- ---</p> <p>〈 삭 제 〉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<u>정감</u>) <u>(1)법 제266조제3항</u>에서 "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	<p>제49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<u>감면</u>) <u>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</u>에서 구 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이라 함은 - - - - - - - - - -</p>
<p>1. ~ 4. (생략) ② (생 략)</p> <p>제50조(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) ①(생략) <u>②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</u> <u>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</u> <u>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</u> <u>면적, 용도,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</u> <u>대상토지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</u> <u>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</u> <u>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3조(<u>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</u> <u>사항</u>) 법 제238조의2, 법 제270조,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0조(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) ①(현행과 같음) <u>②법 제234조의12의</u> - - - - - - - - - - <u>비과세 받고자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기타 비과세</u> <u>대상토지임을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제53조(<u>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</u>) <u>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 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 <u>제63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)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 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 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 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<u>비과세</u> <u>받고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3조(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)</u> <u>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----- ----- <u>비과세 받고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</u></p>